

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규정

제정 2023.08.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학칙 제13조 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호서대학교와 전문대학간의 연계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연계교육과정”이란 연계교육과정 협약에 의하여 호서대학교와 전문대학(이하 “양교”라 한다)간의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- ② “협력대학”이란 호서대학교와 연계교육과정 협약한 대학을 말한다.

제3조(협약) ① 연계 교육과정 협약할 때에는 양교는 교육과정 편성·운영, 교수·학생의 교류 등 실질적인 연계교육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약한다.

1. 연계 교육과정 협약서(별지 서식1)
2.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약서(별지 서식2)

② 연계 교육과정 협약 후 양교의 학부(과)·전공 명칭 또는 교과과정의 개편 등의 사유로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(교과목 편성) ① 협력대학장은 호서대학교 전공교과목과 연계가 가능한 연계교과목을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과목 및 학점을 결정하여 개설하여야 한다.

② 협력대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계교과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육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양교는 상호 협의하여 연계교과목을 공동 개발할 수 있다.

제5조(교과목 이수)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대학에 개설된 연계교과목 중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수 및 학생교류) ① 양교는 연계교육과정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학술교류, 학술행사 및 교수·학생 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.

② 해당 학부(과)·전공 교수는 연계 교육과정의 수업에 상호 참여할 수 있다.

제7조(상호협력) ① 협력대학에서는 연계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호서대학교에서 요청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양교는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편입학 지원 자격) 호서대학교 연계 교육과정 편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 학업성적 등 일정수준의 요건을 갖춘 자
- ② 소정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③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
제9조(모집인원) 모집인원은 당해 3학년 입학정원의 3%,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%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.

제10조(전형 및 선발 등) ① 전형일정은 호서대학교 편입학 전형일정에 의하며, 그 일정은 모집요강에 공고한다.

② 전형방법은 연계 교육과정 운영 협약에 의한다.

③ 연계 교육과정 협약체결 후 호서대학교 연계 교육과정 학부(과) · 전공이 통·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 학부 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경우에는 연계교육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학부(과) · 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을 해당 협력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계 교육과정 운영협의회) ① 연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교는 해당 학부(과) · 전공별로 연계교육 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호서대학교 해당 학부(과)장 또는 전공책임교수로 하며, 위원은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력대학 전임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계 교육과정의 편성 · 운영
2. 연계교육과목 선정 및 교재개발
3. 연계 교육과정 편입학 전형방법
4. 시설 및 기자재 공동 활용
5. 교수 · 학생의 교류 및 협력
6. 연계 교육과정 운영협약체결
7. 기타 연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④ 운영협의회의 소관업무는 해당 학부(과) · 전공에서 관장한다.

제12조(회의) 운영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(2023. 8. 1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연계 교육과정 협약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.